

[] 경차

[] 택시

[] 주한외교관등

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환급일	처리기간	20일
①사업자	① 상 호 (법 인 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 명 (대 표 자)		④ 주민등록번호	
	⑤ 주 소 (사 업 장)		⑥ 전화번호	

② 신 고 내 용

(단위: L, LPG는 kg, 원)

⑦ 환급 예금계좌			금융회사 등 명칭					예금종류	
			계좌번호						
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			년 월(. ~ .)						
⑨ 구분	⑩ 환급 대상건수	⑪ 환급 대상 공급량	환급세액					비고	
			⑫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⑬ 개별 소비세	⑭ 교육세	⑮ 부가세	⑯ 합계	⑰ 총거래 금액	⑱ 환급 대상자 정산액
휘발유									
경 유									
L P G									
합 계									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4까지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감면유류공급명세서(별지 제69호의4서식)	수수료 없음
작성 방법		

1.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,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 및 주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.
2. 환급 예금계좌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